

한국아스팔트학회 정관

제정 2010년 10월 13일

개정 2012년 11월 27일

개정 2016년 3월 31일

개정 2017년 7월 11일

개정 2018년 4월 23일

개정 2020년 5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아스팔트학회 (이하“학회”)라 칭하며, 영문의 표기는 Korean Asphalt Institute (영문 약자: KAI)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아스팔트의 재료, 설계, 시공, 유지관리와 아스팔트제품의 응용, 혼합물 기술의 발전과 보급과 아스팔트 각 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정책과 실무에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국제협력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가 있을 경우 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스팔트의 친환경적인 사용에 대한 기술연구 및 보급
2. 아스팔트도로의 친환경적인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보급
3. 아스팔트도로재료의 기술적인 개발을 통한 시공, 보급의 확대
4. 학회지, 논문집, 기타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도로에 관한 기술정보 자료의 간행과 보급
5. 학술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현장견학 및 시찰, 기술교육의 개최
6.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문과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7.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도로에 관한 연구용역, 기술용역, 자문평가
8.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도로 학문과 기술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 사업
9. 아스팔트 기술자의 지위향상과 친목협조
10. 아스팔트를 기본 재료로 하는 도로포장용 재료에 대한 원가 계산 용역 업무
11. 아스팔트 도로포장 재료의 생산 기술 및 시공에 관한 컨설팅 용역 업무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분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본 학회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만22세 이상인 사람
2.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명예회원: 본 학회에 관련 분야에 공적을 남기고 본 학회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사람
4. 참여회원: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학생회원: 본 학회는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회원인 교수 1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 (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다만 평생회비로 연회비를 대신 할 수 있다.
2. 해외출장, 유학 등의 사유로 연회비 납입이 곤란한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회비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3. 회비의 금액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학술발표회 등의 본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 학회에서 수집, 작성한 자료 및 정보의 이용과 학회지 무료구독이 가능하다.
4. 회원은 본 학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1년을 연속하여 미납하였을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에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3.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는)의 임원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6명, 부회장 약간 명, 고문 약간 명, 감사 2명, 이사 50명 이내, 상임이사, 각 분과위원장, 위원장,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제10조 (임원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이 임기 종료와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추대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상임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7.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총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의 권한을 대행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업무내용 및 회계내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다.
5. 상임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본 학회의 분야별 실무를 관장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6. 이사는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가 수행하는 각종 회의의 기록과 재정 및 일반 업무의 총괄과 회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관장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03월 01일부터 시작된다.

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중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부회장단의 전원 결의가 있을 경우
 - 3) 감사 전원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 4) 50명 이상의 회원연명으로 요청 할 경우
 -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본 학회의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및 규칙의 제정
2.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임원의 위촉 및 해임
4. 예산, 결산 및 사업의 승인
5. 회장 및 이사회가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시도 지부의 설치 및 해산
7. 기타 주요사항

제15조 (총회 의결 정족수) 본 학회의 총회 의결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회원과 참여회원으로만 참석회원이 구성된다.
2. 총회 개최 전까지 권리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의 경우는 이를 출석인원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특별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4. 총회의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총회 의결권의 제척)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의결 시 자신에 관한 사항일 때
2.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 본 학회의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 의결사항)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6. 학회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7. 투자 등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해체 의결
9. 회원의 제명 의결
10. 회원회비의 결정
11.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12. 회장, 감사의 선출
13. 기타 사항은 전항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상적 업무이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본 학회 이사회 의결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6장 상임이사 및 위원회

제20조 (상임이사회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1조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심사
3. 이사의 추천 심의
4. 이사회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과 보고 사항
5. 이사회 상정 할 제 규정의 제정안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6. 상벌에 관한 사항 심의

제22조 (상임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상임이사회 소집과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상임이사회는 매회계년도 중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 재적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상임본부의 업무) 본 학회의 제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임본부를 둔다. 상임본부는 상임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상임본부장은 상임부회장이 된다. 각 본부는 해당 본부별 전문 위원을 3명 이내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본부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인가 후 선임, 위촉한다.

1. 총무본부의 담당업무는 기획 업무, 재무 및 경리, 회원가입 등록 및 조직 인사, 회의소집 및 개최, 기타 타 본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학술본부의 담당업무는 논문집 발행 및 제출된 논문 심사, 학술발표회, 강연회의 개최, 아스팔트의 기술에 관하여 학회 차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편집본부의 담당업무는 학회지 및 학술간행을 발행, 연구보고서, 자료 및 기술 지도서 발간
4. 사업본부의 담당업무는 관련단체와 유대 및 정보교환, 관련사항과 기존의 연구, 기술지도, 교육 및 수익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홍보본부의 학회홍보관련 제반 사항
6. 국제본부의 담당 업무는 관련 국제단체와 활동 협력, 국제학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및 제반 해외 업무
7. 사무국은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되, 이사회의결로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회장, 상임 본부의 지도, 감독과 사무국장의 관장 하에 업무를 집행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24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위원으로는 명예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 한다.

1.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활동보고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분과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분과로 분리하여 설치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1. 가열아스팔트 분과위원회
2. 상온아스팔트 분과위원회
3. 재생아스팔트 분과위원회
4. 유화아스팔트 분과위원회
5. 방수아스팔트 분과위원회
6. 특수아스팔트 분과위원회
- 7.아스팔트 플랜트 분과 위원회

제26조 (분과위원회 업무) 본 학회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아스팔트 활용기술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신설 혹은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분과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장 사업

제27조 (학술발표회)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 (논문집 및 학회지 발간) 본 학회는 상반기, 하반기 논문집 및 학회지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 (기타사업) 본 학회의 목적과 정관 제4조에서 정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사업에 의하여 기는 수익, 기부금품, 기타 수입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의 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사업개시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검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회장이 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35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의 2/3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로 해산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목적이 현저히 유사한 학회에 기부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등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제11장 부칙

제1조 본 학회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주소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14 신성오피스텔비동4층410호에서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54, 상가308호(반송동, 동양파라곤)(2012년 11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09, 304호(반송동, 골드프라자) (2017년 08월 01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내 석재복합센타 203호(-2015년 09월 0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09, 304호(반송동, 골드프라자)